



보도시점 2026. 5. 29.(금) 12:00 (2026. 5. 30.(토) 조간)

202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10개 사업장 명단 공표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2025년 기준) 이행률 94.9%, 전년 대비 1.0%p 증가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5월 29일(금)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1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

공표 명단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명·주소 및 사업주의 성명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상시근로자 수·명단 공표 누적 횟수·의무 불이행 사유 등도 공표된다.

-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 → 교육부 소식 → 명단 공표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청년/여성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및 미회신 사업장 명단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각 시도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제도의 책임성과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4.9%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74개소 중 1,103개소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85개소는 위탁보육**을 하는 등 총 1,588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1.0%p 상승한 것이다.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 개별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에 대해 사업주가 보육 지원

< 2024년, 2025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현황 >

(단위 : 개)

구분	의무사업장 (A=B+C)	이행(B)			미이행(C)
		계	설치	위탁보육	
2025년	1,674	1,588(94.9%)	1,103	485	86(5.1%)
2024년	1,643	1,543(93.9%)	1,083	460	100(6.1%)

‘직장어린이집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86개소)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76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1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86개 사업장 (명단 공표 10개+ 명단 공표 제외 76개) 전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사업장의 부담과 현장 여건도 함께 고려하면서 직장어린이집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부모의 일과 아이 돌봄,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일·가정 양립 기반이다.”라고 강조하며, “더 많은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설명회와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 명단 공표 대상
 2.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 및 명단 공표 제도 개요
 3.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규정
 4.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지원

담당 부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	책임자	과장	이정규 (044-203-7218)
		담당자	사무관	김동경 (044-203-7222)
			주무관	박재향 (044-203-7223)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책임자	과장	박정현 (044-202-7496)
		담당자	사무관	황세연 (044-202-7045)
			주무관	권순한 (044-202-7438)

붙임 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 명단 공표 대상

* 가나다 순으로 명단 공표

(’25.12.31. 기준)

연번	사업장 명칭*	주소	사업주명	상시 근로자 수	상시 여성 근로자 수	명단공표 누적 횟수	사업장에서 제시한	
							보육 대상 영유아 수	미이행 소명사유(미인정)
1	대전한국병원	대전 동구	정봉각 외 5명	439	330	1	47	1년 이내 의무사업장
2	새솔다이아몬드공업(주)	경기 안산시	맹주호	550	84	1	77	직장어린이집 설치계획
3	아이디병원 ³⁾	서울 강남구	박상훈	388	338	1	26	-
4	에스에이피 코리아	서울 영등포구	신은영	549	236	1	76	기타
5	의료법인문병욱의료재단 (진주고려병원)	경남 진주시	문용규	410	310	1	11	기타
6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하나로리더스의원	서울 강남구	이관수	437	346	1	42	기타
7	주식회사 비에이치 2공장	인천 서구	최영식	1,027	287	2	119	기타
8	주식회사 다스	경북 경주시	이상은, 조진현	1,507	108	11	191	기타
9	(주) 에스에스지닷컴	서울 영등포구	최택원	744	400	3	175	기타
10	주식회사 엠티에스코퍼레이션	경기 이천시	손유성	725	8	1	99	보육수요 부족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은 없음

- 1)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 주소
- 2) 명단공표 누적 횟수는 2026년 공표횟수(1회) 포함
- 3) 소명의사 없는 사업장으로 명단공표 대상으로 포함

붙임 2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 및 명단 공표 제도 개요

주요사항	내 용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동법 시행령 제20조의4, 제20조의5 ('12.6.29 시행)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관계부처 합동(교육부, 고용노동부, 시도) 조사 실시(매년 1분기~) * (고용부) 일반 기업, (시·도) 지방행정기관 (교육부) 국가기관 및 그 외 사업장 * 조사수행 : 한국보육진흥원,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설치 의무 사업장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공표 사항	사업장 명칭·주소, 사업주 성명, 상시(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 누적 위반 횟수·미이행 사유 등
공표 시기 및 방법	매년 5월 말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 및 2개 이상 일간지 게재
이행 기준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② 위탁 보육
공표 대상 (기준)	설치 의무 이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명결과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과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공표 제외 사유	① 설치 대상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설치 중인 경우 ③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 심의위원회에서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 총 9명 - 교육부(1인), 근로자 대표(1인), 사업주 대표(1인), 법률전문가(1인), 공익대표(2인), 보육전문가(3인)
공표 절차	①심의 ⇒ ② 공표대상 사업장에 사실 통보 ⇒ ③ 20일 이상 소명자료 제출 등 의견진술 기회부여 ⇒ ④ 공표(제외)대상 사업장 재심의 ⇒ ⑤ 공표대상 사업장 최종확정 및 공표(매년 5.31.까지)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여부 판단 기준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 사업주가 단독·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

② 위탁보육 실시

- 어린이집과 계약을 체결,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위탁하여 보육하고,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지원

⇒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모보육료(부모가 바우처로 어린이집에 지불하는 비용)의 총합을 의미하며, 그 비용의 50% 이상을 회사가 어린이집에 추가로 지원

* 예) 근로자 자녀 중 1세 영유아 5명, 2세 영유아 10명, 3~5세 영유아 15명을 어린이집에 위탁보육하는 경우 회사의 최소 지원비용('25년 보육료 기준)

→ (47.5만 원×5명 + 39.4만 원×10명 + 28만 원×15명) × 0.5 = 525.7만원

☐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

① 이행명령 부과(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2)

-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자체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재차 이행명령 가능

② 이행강제금 부과(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3)

- 2차 이행명령까지 불이행시 1년에 2회, 매회 1억 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가능
-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부과 가능

☐ 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영유아보육법 제56조)

붙임 4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지원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는 아래 기준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기준 및 한도 >

구분	지원 종류	내역			지원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설 치 비	무상 지원	대규모 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3억 원	소요비용의 60% *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80%	
			공동			6억 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	단독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4억 원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40%)
				우선지원대상 기업2~4개소인 사업주 단체			10억 원	
				우선지원대상 기업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			20억 원	
			(공동)		시설개보수비	1억 원	소요비용의 90%	
					시설임차비	3억원	임차비(월세에 한함): 80%	
			대규모기업		교재 교구비 (교체비: 3년 교체시마다 3천만원)	5천만원	소요비용의 60% *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80%	
		우선지원대상기업		7천만원		소요비용의 90%		
		인 건 비	인건비 지원	대규모기업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월 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월 최대 138만 원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월 200만 원 ~ 520만 원	* 기준: 매월 말일 말일 보육아동 현원에 따라 차등 지원			